

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



※ 본 안내문은 2023.05.10. 기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 
※ 모든 청약자격 및 요건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.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 및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등본 상 원주시(강원도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</li> <li>②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3명(태아 포함) 이상</li> <li>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당첨자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당첨자 선정 기준</b> 해당지역(원주시)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”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또한,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.</li> <li>▶ <b>유의사항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어야 합니다.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.</li> <li>•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.(단,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 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)</li> <li>•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• 이혼,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,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.</li> <li>•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• “소형·저가주택 등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 미적용)</li> <li>• 기타 본 안내문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점 기주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평점요소</th> <th rowspan="2">총배점</th> <th colspan="2">배점기준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기준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(1) 미성년 자녀 수</td> <td rowspan="3">40</td> <td>5명 이상</td> <td>40</td> <td rowspan="3">• 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</td> </tr> <tr> <td>4명</td> <td>35</td> </tr> <tr> <td>3명</td> <td>3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(2) 영유아 자녀 수</td> <td rowspan="3">15</td> <td>3명 이상</td> <td>15</td> <td rowspan="3">• 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</td> </tr> <tr> <td>2명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1명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(3) 세대 구성</td> <td rowspan="2">5</td> <td>3세대 이상</td> <td>5</td> <td rowspan="2">•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</td> </tr> <tr> <td>한부모가족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(4) 무주택 기간</td> <td rowspan="3">20</td> <td>10년 이상</td> <td>20</td> <td rowspan="3">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•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</td> </tr> <tr> <td>5년 이상~10년미만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1년 이상~5년미만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(5) 해당 시·도 거주 기간</td> <td rowspan="3">15</td> <td>10년 이상</td> <td>15</td> <td rowspan="3">• 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지역(강원도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</td> </tr> <tr> <td>5년 이상~10년미만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1년 이상~5년미만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(6)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</td> <td>5</td> <td>10년 이상</td> <td>15</td> <td>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	기준	점수	(1) 미성년 자녀 수	40	5명 이상	40	• 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	4명	35	3명	30	(2) 영유아 자녀 수	15	3명 이상	15	• 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	2명	10	1명	5	(3) 세대 구성	5	3세대 이상	5	•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	한부모가족	5	(4) 무주택 기간	20	10년 이상	20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•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	5년 이상~10년미만	15	1년 이상~5년미만	10	(5) 해당 시·도 거주 기간	15	10년 이상	15	• 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지역(강원도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	5년 이상~10년미만	10	1년 이상~5년미만	5	(6)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5	10년 이상	15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	
평점요소	총배점			배점기준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기준	점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 미성년 자녀 수	40	5명 이상	40	• 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4명	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3명	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) 영유아 자녀 수	15	3명 이상	15	• 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2명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명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3) 세대 구성	5	3세대 이상	5	•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한부모가족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4) 무주택 기간	20	10년 이상	20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• 청약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5년 이상~10년미만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년 이상~5년미만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5) 해당 시·도 거주 기간	15	10년 이상	15	• 공급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해당지역(강원도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5년 이상~10년미만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년 이상~5년미만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6)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5	10년 이상	15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유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  
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